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발 의 자 : 김광수, 김기덕, 김화숙, 김제리,
권영희, 유정희, 오중석, 임종국,
박상구, 이병도, 김경영, 채유미
의원 (12명)

1. 제안이유

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시장이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의5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